구 분	경 매	공 매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므로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면, 「법원사무관 등」(종전에는「집행법원」)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종전의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법 제144 조).	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법 제77조). 공매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나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므로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청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멸한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引渡命令의 가부	매수인은 대금지급 후 6월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 '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 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 및 소유자외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심문(審問)한다. 따라서 대금지급 후 6월이 경과하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 에 대하여는 「명도소송(明渡訴訟)」을 제기한다 (법 제136조).	공매절차에는 인도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수인는 매수대금을 완납한 뒤에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 매매와 같이 「명도소송(明渡訴訟)」을 제기한다. 따라서 공매공고에, '당공사는 매각물건에 대하여 명도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다.
경매절차와 공매 절차의 競合	'강제 및 임의경매절차' 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 가 경합된 때에는, 이를 조절할 법률이 없으므로 양절차는 병행(竝行)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61. 7. 6.자 4294 민재항 54결정). 따라서 양절차 중 먼저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면, 다른 절차를 속행할 수 없어 그 절차를 취소(取消)한다(대법원 1959. 5. 19.자 4294민재항 2결정).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경합하면 병행할 수 밖에 없고, 양절차 중 한절차에서 먼저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면 다른 절차는 취소된다. 그런데,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2002. 6. 30.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交付請求)」할 수 있으므로 (법 제56조), 공매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공매를 사실상 보류하고 있다.